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20
------	------

2020. 11.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0.11.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13.4.11.에 개소하였으며,

나. 그간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에 기여 하였음

다. 2012.10.1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內)
- 시설규모 : 1,486㎡(1동 1층 일부)
- 시설용도 : 사무실, 공유오피스, 공동교육장, 사회적경제 매장 등
- 운영인력 : 총 24명

나.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및 제12조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사회적경제 모델발굴과 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의 위탁 운영 필요
-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필요

라. 위탁사무 내용

- 사회적경제 주체양성과 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공공 및 민간 시장조성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관리
- 그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 위탁기간 : 3년(2021.1.23. ~ 2024.1.22.)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사. 소요예산(안) : 6,500,000천원(2021년 예산편성안 기준)

- 산출근거 : 인건비 1,530,000천원, 운영비 360,000천원,
사업비 4,610,000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2020.7.8.)
-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정’ 의결(2020.8.13.)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적정’ 의결(2020.9.29.)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최초 동의 후 (2012.10.12.)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재계약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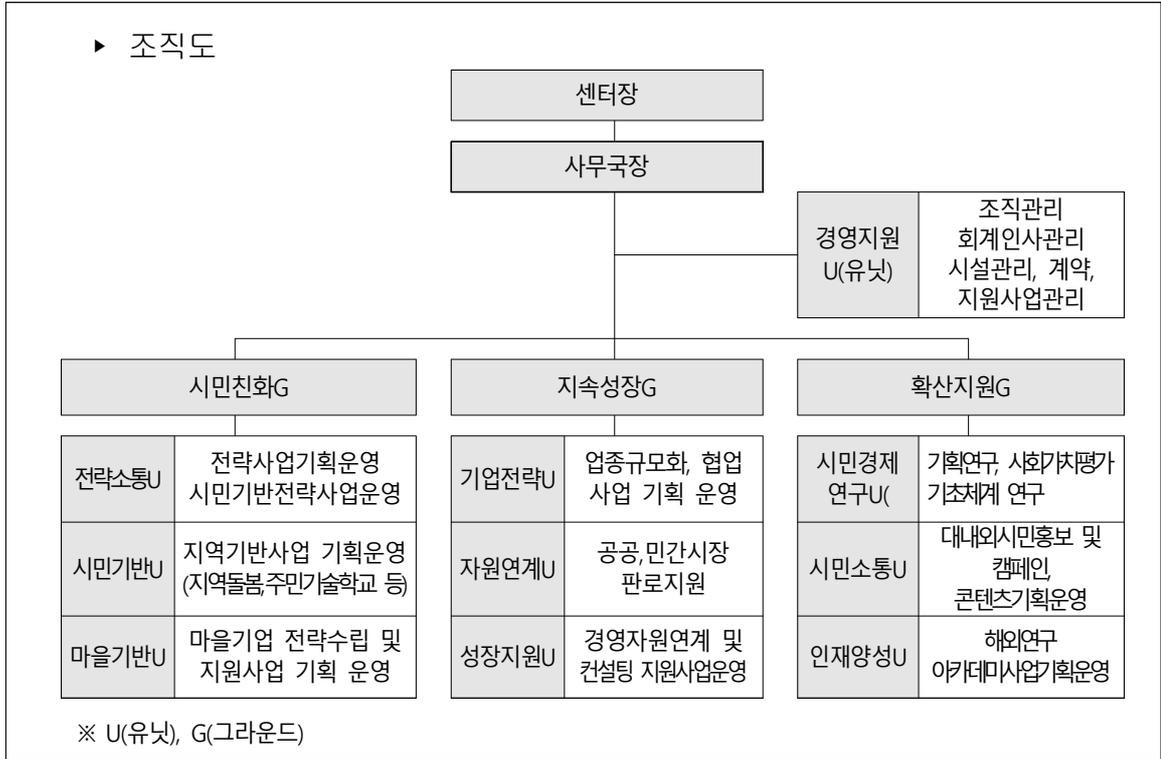
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3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요 >

-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內
- ▶ 시설규모 : 1,486㎡ (혁신파크 1동 1층 일부)
- ▶ 시설용도 : 사무실, 공유오피스, 공동교육장, 사회적경제매장 등
- ▶ 현 수탁기관 :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 ▶ 소요예산(안) : 50억 9천만원(2021년)
- ▶ 운영인력 : 24명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2항 단서조항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경센터는 최근 3년간 588건의 공공구매 상담운영과 719개 기업의 민간시장 입점지원 등 판로지원, 529건의 경영컨설팅·법률·회계 지원, 18건의 기획연구, 전략사업 개발, 마을기업 발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음.
- 또한 상암소셜박스(7개기업 입주)와 기술혁신랩 운영(68회, 197명), 개봉·가락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공간 조성부터, 사회적경제의 일상 체감을 위한 “사회적경제 2.0 정책”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이밖에도 ‘같이살림 프로젝트2)’ 등 사회적가치 증대 가능성이 높은 표준모델의 개발을 통해 서울시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시범운영한 뒤

2) ‘같이살림프로젝트’는 공동주택단지를 기반으로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려는 것으로 사경센터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 후 서울시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본 사업으로 실행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사업 파트너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음.

- 2021년 사경센터의 민간위탁금은 50억 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액된 수치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액분(32억원)을 제외하면 민간위탁금은 유사한 규모로 지원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내역 >

(2020년 10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민간위탁금	4,937	4,923	4,656	4,656	8,543	7,410	5,090
인건비	1,220	1,215	1,242	1,242	1,277	995	1,322
운영비	260	260	274	274	307	230	360
사업비	3,457	3,448	3,140	3,140	6,959	6,185	3,408

다. 민간위탁 재계약 타당성

- 동의안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과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등의 사무를 수행함.
- 따라서 사경센터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식일 수 있음.

- 사경센터는 최초 위탁(2013.01.~2015.01) 이후, 재계약(2015.01.~2018.01), 재위탁(2018.01.~2021.01)을 거쳐 8년째 운영 중인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예정임³⁾.
- 현 수탁기관인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⁴⁾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위탁운영,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설립 주도 및 민간 공동의장 수행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경험이 있어 재계약의 당사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
- 위탁사무 수행 성과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 구매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공동 작업장 조성관리 등에서 목표 대비 우수한 실적을 보였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득점
공통사무 평가	사업인프라	조직 및 인력운영	7.00	5.71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5.00	3.50
		사회적가치기여	12.00	7.96
	사업활동	사업계획 집행수준	6.00	4.88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9.00	7.45
개별사무 평가	사업성과	사업성과 평가결과	35.00	29.88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수준	3.00	2.85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경센터와 같은 시설형 위탁사무의 경우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함.

4)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지부, 서울지역 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서울자활기업협회 등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단체임.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득점
	지도점검 이행노력	지도점검 이행노력 평가결과	8.00	7.50
사용자만족도 평가	만족도 제고노력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15.00	12.95
감점사항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 부당취득		-2.00
합 계				80.68

- 다만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직원 퇴사로 인해 일부 행정업무를 외주 용역하고 관련 수수료를 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서울시가 정한 목적 외 예산집행이 발생하였고(2018년), 계약사무에 있어 단독 입찰시 재공고 없이 사업자를 선정(2018년, 2019년)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향후 동일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임⁵⁾.
- 한편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제298회 정례회에 제출되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제출하여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향후에는 서울시가 자체 수립한 지침을 스스로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5) 2018~19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총 12건에 대해 100% 조치완료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0
----------	------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13.4.11.에 개소하였으며,
- 나. 그간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확대와 질적성장에 기여하였음
- 다. '12.10.1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內)
- 시설규모 : 1,486㎡(1동 1층 일부)
- 시설용도 : 사무실, 공유오피스, 공동교육장, 사회적경제 매장 등
- 운영인력 : 총 24명

나.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및 제12조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사회적경제 모델발굴과 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의 위탁 운영 필요
-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필요

라. 위탁사무 내용

- 사회적경제 주체양성과 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공공 및 민간 시장조성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관리
-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 위탁기간 : 3년('21.1.23. ~ '24.1.22.)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사. 소요예산(안) : 6,500,000천원('21년 예산편성안 기준)

- 산출근거 : 인건비 1,530,000천원, 운영비 360,000천원, 사업비 4,610,000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20.7.8.)
-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정' 의결('20.8.13.)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적정' 의결('20.9.2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조직담당관, '20.1월)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조례 제2조 제5호)

나. 예산조치 : 2021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출

※ 작성자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이두영 (☎2133-5484)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1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육성업무의 일부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